

국내 입양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A Study on Increase of Domestic Adoption and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기독교복지학전공

조교수 변 미 희**

Dep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Byun, Mi-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for domestic adoption increas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 adoption policy and service about America, Canada, France and Swede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local government must open adoption center for information and support pre adoptive family and adoptive family. The adoption center can provide research of adoption and education of adoption.

Second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must support cost of adoption and adoptive child care.

Finally, the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 for adopted children and adoptive family.

주제어(Key Words) : 국내입양(domestic adoption), 입양정책(adoption policy), 입양가족복지서비스(adoptive family welfare service)

* 본고는 광주광역시와 한국입양홍보회 광주지역 입양부모모임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입양문화형성을 위한 세미나’의 주제발표 자료를 수정 보완하였음.

** 교신저자 : 변미희(E-mail: bmh@bu.ac.kr)

1. 문제 제기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만일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양육위탁,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 등의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고,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에서도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은 자신의 태어난 가정이나,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입양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가정생활의 권리는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50% 이상이 시설보호로 배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입양정책 고찰을 통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입양정책 고찰을 통하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선진국의 입양수수료 및 양육보조금 지원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선진국의 입양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

2. 입양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는 영구적으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50% 이상이 시설보호로 배치되고 있는데, 시설보호가 인지, 신체, 정서, 사회, 문제행동 등 아동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¹⁾는 국내외 연구결과(권세은, 이순형 2002; 노혜련, 장정순, 1998; 유안진 외 2003; Bawlby, et al., 1997; Vorria, et al., 1998; Whittaker, 1985, 변미희 외, 2006, 재인용)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입양가정에 배치된 아동의 발달결과를 살펴보면 비입양아동과 비교했을 때, 입양아동은 아동기 중반에서 십대 초반에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지만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반이 되면 사라지고, 대다수의 입양인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잘 성장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첫 번째로 스웨덴에서 1956년과 57년에 입양을 위해 등록된 아동 624명을 입양아동, 친생모양육, 위탁아동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일반아동과 11, 15, 18, 23세에 비교 조사하였는데, 18세 조사결과 인지적, 심리사회적 면에서 입양남아는 통제집단과 큰 차이 없으나, 친생모양육과 위탁남아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23세에 범죄기록과 금주법 위반 기록을 보면 위탁아동 남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Michael & Sören, 1990)

두 번째로 미국 콜로라도 입양프로젝트에서도 1976년 백인 신생아 입양아동 199명과 비입양아동 216명을 대상으로 7세, 12세 읽기, 수학, 지능 등을 비교 조사하였는데, 입양아동은 비입양아동에 비해 학업성취가 다소 낮은 경향이 있지만 정상적인 범위에 있다고 보고되었다(Sally, Wadsworth, DeFries & David, 1993).

마지막으로 영국의 국가 아동발달연구에서는 1958년부터 23년간 7, 11, 16, 23세 네 차례에 걸쳐 사생아로 태어난 후 입양된 아동, 사생아로 태어나 친생부모에 의해 양육된 아동, 일반아동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기에는 일반아동, 입양아동, 친생부모 아동 순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16세 입양아동은 불행하고, 불안한 행동을 반영하는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23세에는 세 집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친생부모가 양육한 집단의 직업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rbara & Andrew, 1990).

3. 요보호아동 및 입양 현황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혈연중심의 가족문화로 인해 혈

1) 국내 입양이 어려운 현실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수고하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관계가 없는 아동을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양보다는 시설보호에 배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에 제시하였듯이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은 기아, 미혼모아동, 미아, 비행·가출·부랑아동, 빈곤·실직·학대아동 등이다. 보호내용은 아동시설, 장애아동시설, 미혼모시설 등 시설보호와 소년소녀가정 책정, 입양, 위탁보호 등 가정보호가 있다. 2005년 전국의 요보호아동 중 51.2%가 시설로 배치되었고, 19.9%만이 입양되었는데, 입양된 아동 중에서 50%이상이 해외로 입양되므로,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전체 요보호 아동 중에서 10%가 안 된다(보건복지부, 2005).

<표 1>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시·도	요보호 아동의 발생유형						보호내용								
	계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	빈곤 실직, 학대, 등기타	계	시설보호				가정보호			
								소계	아동 시설	장애 아 시설	미혼 모 시설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책정	입양	위탁 보호
계	9,420	429	2,638	63	1,413	4,877	9,420	4,818	4,769	48	1	4,602	407	1,873	2,322
서울	4,470	114	2,225	15	965	1,151	4,470	2,239	2,204	35	-	2,231	-	1,710	521
부산	551	56	4	9	31	451	551	252	249	3	-	299	55	-	244
대구	182	37	13	-	8	124	182	157	155	2	-	25	8	-	17
인천	162	23	33	1	-	105	162	162	162	-	-	-	-	-	-
광주	162	5	57	3	3	94	162	146	146	-	-	16	-	5	11
대전	324	12	3	-	162	147	324	275	275	-	-	49	10	-	39
울산	38	5	1	-	4	28	38	25	25	-	-	13	2	-	11
경기	1,057	62	123	12	49	811	1,057	425	422	3	-	632	87	80	465
강원	411	9	14	4	30	354	411	139	137	2	-	272	6	-	266
충북	140	7	31	1	32	69	140	82	82	-	-	58	19	-	39
충남	263	15	8	3	9	228	263	103	101	2	-	160	50	7	103
전북	399	25	8	2	63	301	399	217	217	-	-	182	83	-	99
전남	605	14	100	1	11	479	605	203	203	-	-	402	53	51	298
경북	234	18	12	6	6	192	234	147	146	1	-	87	19	-	68
경남	318	18	5	6	32	257	318	185	184	-	1	133	10	3	120
제주	104	9	1	-	8	86	104	61	61	-	-	43	5	17	21

보건복지부, 2005

〈표 2〉 입양 현황

구분	입양기관			입양아동		
	계	국내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1990	31	27	4	4,609	1,647	2,962
1995	27	23	4	3,205	1,025	2,180
2000	26	22	4	4,046	1,686	2,360
2005	24	20	4	3,562	1,461	2,101
서울	6	2	4	3,188	1,087	2,101
부산	1	1	-	6	6	-
대구	1	1	-	9	9	-
인천	1	1	-	35	35	-
광주	2	2	-	42	42	-
대전	1	1	-	24	24	-
울산	1	1	-	4	4	-
경기	2	2	-	109	109	-
강원	1	1	-	12	12	-
충북	2	2	-	42	42	-
충남	1	1	-	7	7	-
전북	1	1	-	6	6	-
전남	1	1	-	50	50	-
경북	1	1	-	11	11	-
경남	1	1	-	3	3	-
제주	1	1	-	14	14	-

보건복지부, 2005

4. 선진국의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 지원 제도

1) 입양수수료 지원

선진국의 입양수수료 지원은 〈표 3〉에 제시하였는데,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에게만 입양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국가와 모든 입양아동에게 입양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국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뉴욕 주의 경우 입양이 어려운 아동에게 2,000불,

프랑스는 1,900에서 4,000유로, 스웨덴은 40,000 SEK, 한국의 과천시 는 백만 원의 입양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표 3〉 선진국의 입양수수료 지원

국가	대상	지원액	비고
미국 뉴욕 주	- 장애아동 - 입양되기 어려운 아동 · 원가정과 분리 후 6개월 이내에 입양되지 못한 경우 · 10세 이상의 연장아동 · 형제자매를 함께 입양해야 하는 아동 · 위탁부모와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등	2,000불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핀란드	- 해외입양아동	- Estonia 1,900유로 - 중국, 콜롬비아 4,500 유로 - 그 외 국가 3,000 유로	한 명 이상 입양할 때 추가. 아동을 위한 급여액의 30% 지급
스웨덴	- 해외입양아동	40,000 SEK	
한국 과천시	- 모든 입양아동	1인당 1백만 원	

출처: North American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http://www.nacac.org/>

핀란드 정부 <http://virtual.finland.fi/>, 스웨덴 정부 <http://www.sweden.gov.se/>

미국 1달러: 960원, 1유로: 1,210원, 1크로나: 130원

2) 입양수당 및 양육보조금(Adoption Allowance, Adoption subsidy)

선진국의 입양수당 및 양육보조금은 입양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국가와 특별한 욕구가 있는 입양아동에게만 양육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국가로 분류되며, 〈표 4〉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미국 뉴욕 주의 경우는 입양이 어려운 아동에게 460에서 626달러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450에서 615달러의 생활 필수품비, 24에서 54달러의 의류비가 지원된다. 프랑스는 입양부모 자산 조사 후 166.05 유로의 입양수당이 지급되며, 한국의 과천시와 인천시는 월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표 4〉 선진국의 입양수당 및 양육보조금

국 가	대 상	기 간	수당, 양육보조금	비 고	
미국 뉴욕 주	- 장애아동 - 입양되기 어려운 아동: · 원가정과 분리 후 6개월 이내에 입양되지 못한 경우 · 10세 이상의 연장아동 · 형제자매를 함께 입양해야 하는 아동 · 위탁부모와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등	21세 미만	- 양육보조금 0~5세 460달러 6~11세 541달러 12~16세 626달러 - 생활 필수품비 0~5세 450달러 6~11세 540달러 12~16세 615달러 - 의류비 0~5세 24달러 6~11세 35달러 12~16세 54달러	- 16세 이상은 의류비만 630불 지급됨 - 기본비용을 제시하였고, 입양아동의 욕구에 따라 양육보조금 1,525불까지 지급됨 - 주에 따라 입양양육보조금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캐나다 British Columbia	- 장애아동 - 입양이 어려운 아동: 연령, 형제자매, 입양을 원하는 성인과 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 문화적 요인	19세 미만	양육보조금 0~11세 701.55달러 12세 이상 805.68달러	- 주에 따라 입양양육보조금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프랑스	입양아동	18세 미만	입양수당 166.05 유로	- 입양부모 자산조사후 급여여부 결정	
핀란드	모든 아동(입양아동 포함)	17세 미만	아동수당 첫째 90유로 둘째 110유로 셋째 131유로 넷째 151유로 다섯째이상 172유로		
스웨덴	모든 아동(입양아동 포함)	16세까지 16세 이상 ~학교 재학	아동수당 950SEK 950SEK	셋째자녀 254SEK 넷째자녀 760SEK 다섯째이상 950SEK 추가	
한국	전국	장애아동	18세 미만	월 525,000원	
	과천시	모든 입양아동 2005년 이전	18세 미만, 3년(36회)	입양수당 월 5만원	
		2006년 이후		월 20만원	
	인천시	모든 입양아동		월 20만원	인천관내 입양기관에서 입양
	전북	모든 입양아동 2005년 이후		월 10만원	

출처: North American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http://www.nacac.org>핀란드 정부 <http://virtual.finland.fi>, 스웨덴 정부 <http://www.sweden.gov.se>프랑스 정부 <http://www.service-public.fr>, 한국입양홍보회

미국 1달러: 960원, 캐나다 1달러: 873원, 1유로: 1,210원, 1크로나: 130원

3) 입양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1) 입양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요

입양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옹호, 사정, 사례관리, 상담/치료, 위기개입/가족보존, 정보/의뢰, 멘토링프로그램, 아웃리치, 레크리에이션/사회적 활동, 아동지지도교육집단, 부모지지도교육집단, 휴식(respite)/휴식 의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과천시에서 입양가족 자조모임, 입양주간 기념행사, 초·중·고등학교 반편견 입양교육, 입양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입양가족캠프 및 홍보비 지원, 입양시범기관 운영비 지원, 입양주간 기념행사, 입양아동 심리치료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에서 입양아동 및 가족에게 꼭 필요한 예비입양부모교육 및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 예비입양부모교육

예비입양부모는 예비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입양에 대한 걱정과 기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입양과정 스크린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지지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Barth & Berry, 1988; Farber, Timberlake, Mudd, & cullen, 2003; Groze, 1996; Kramer & Houston, 1998; Smith & Howard, 1999).

이와 같이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입양아동 및 가족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양기관의 입양부모교육은 기관의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홀트 아동복지회는 예비입양부모 사전교육을 1회 4시간, 총 2회 8시간 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입양의 특성 이해, 행복한 부부대화법, 입양사례발표 등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아동심리, 정서, 신체발달 등 양육에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사회복지회는 예비입양부모 사전교육을 1회 4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소개, 입양의 이해(영상물), 부모효율성훈련(PET), 사례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 후에 예비입양부모가 원할 경우 1시간 정도 질의응답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입양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은 6시간에서 10시간, 1, 2회로 진행되므로 예비위탁·입양부모가 위탁부모나 입양부모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됨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러한 현행 예비위탁, 입양부모 준비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예비입양부모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62 공개입양가정을 조사한 백경숙과 변미희(2001)의 조사에서 공개입

양부모의 93.5%가 입양전 프로그램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교육내용으로 입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52.9%), 입양에 관한 정보(44.7%)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저자는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예비위탁·입양부모 준비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PRIDE(Parent Resources for Information, Devepolment, and Education), PS-MAPP(Partnering for Safety and Permanence- The Model Approach to Partnership in Parenting), 영국의 The Preparing for Adoption Group, The Preparing for Fostering Group 프로그램과 스웨덴의 Discussions on adoption 을 소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에 제시한다.

〈표 5〉 외국의 예비입양부모 준비프로그램

프로그램명	PRIDE*	PS-MAPP*	The Preparing for Adoption Group	Discussions on Adoption**
국가	미국	미국	영국	스웨덴
개발년도	1993	1991	-	-
개발기관	일리노이 가족아동복지 서비스부 CWLA(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Child Welfare Institute	The Adoption and Fostering Information Line	Swedish Intercountry Adoptions Authority (MIA)
저자	Deluca & Spring	Lillie		
교육기간	매주 3시간, 9회기	매회기 3시간, 10회기	3~4 주, 4 ~ 6회	매주 저녁 3회
내용	1회기 도입 2회기 영구성(Permanency)을 향한 팀워크 3회기 발달육구 다루기: 애착 4회기 발달육구 다루기: 상실 5회기 가족관계 강화하기 6회기 발달육구 다루기: 훈육 7회기 가족관계 지속하기 8회기 도전을 위한 계획하기 9회기 결정하기	1회기 도입 2회기 위탁/입양경험 3회기 상실과 성취 4회기 아동의 애착형성주기 5회기 아동의 자기행동관리주기 6회기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동되기 7회기 성취와 상실 - 위탁보호에서 아동이 떠날 때 도움주기 8회기 위탁과 입양의 영향력 이해 9회기 위탁양육과 입양양육의 전망 10회기 종료와 시작	- 입양과 관련된 이슈 - 아동과 위탁·입양과 관련된 태도, 신념 - 위탁·입양부모와의 만남 - 위탁·입양가정방문	- 1회기 입양계획 및 입양동기 이야기하기 - 2회기 입양과 관련된 이슈에 집중하기: 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관심, 입양아동과 함께 친생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 - 3회기 아동의 배경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외국인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의 다른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효과	교육과 실습을 통해 위탁·입양부모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에 효과적임	위탁·입양부모의 지식, 태도, 기술 습득에 효과적임	위탁·입양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도가 증가함	입양에 대해 깊이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도움을 줌
출처	PRIDEbook	PS-MAPP: Trainer's Guide	http://www.adoption.org.uk http://www.fostering.org.uk	Swedish Intercountry Adoptions Authority (MIA)

* PRIDE, PS-MAPP 프로그램은 예비입양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예비위탁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됨
 ** Advice and Tips for Adoption Counselling in Group

(3) 입양부모교육

미국의 건강&휴먼서비스부 아동가족팀 전국입양정보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입양부모지지 및 교육집단은 15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되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기적으로 집단에 참여한 부모들은 집단응집력을 발달시키고, 비공식적인 멘토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집단에 참여한 가족은 외로움은 덜 느끼고, 입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식은 더 많이 알게 되고, 입양아동을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족 내에서 그리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에게 입양에 대해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모임에 참여한 가족이 집단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보다는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좀 더 빨리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NAIC, 2005).

영국의 안나프로이트센터와 코람입양서비스 센터에서는 입양부모를 위한 양육기술로 놀이, 칭찬과 보상, 효과적인 한계설정, 문제행동 다루기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에 참여한 입양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ay & Norma, 2005). 그리고 입양가족간의 입양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양아동은 성장발달하면서 혼란을 겪게 된다(Kirk, 1964). 이러한 입양아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Gretchen, Julie, Harold 그리고 Ruth (2003)는 Family Adoption Communication(FAC)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 모델에서는 1단계 입양부모가 입양아동과 배치 및 친생부모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2단계 입양아동의 입양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3단계 입양아동이 스스로 추가 정보를 수집할 때 입양부모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며, 사례연구결과 입양가족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 후 입양부모교육은 입양아동 및 가족의 적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1~3개월에 1회씩 자조모임을 가지고, 매년 입양가족캠프, 입양아동캠프를 열고 있고, 입양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입양부모자조모임을

개최하고 있지만, 국내 입양부모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62 공개입양가정을 조사한 백경숙과 변미희(2001)의 조사에서 공개입양가정이 요구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중 공개입양부모의 95.2%가 입양부모교육을 요구하였는데, 입양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예비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본 고에서는 <표 6>에 미국의 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표 6〉 미국의 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PRIDE Core*	Foster Parent College**
개발년도	1993	2005
개발기관 및 저자	일리노이 가족아동복지서비스부 CWLA(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Richard
교육기간	11모듈 총 87시간	프로그램당 30분 이상
내용	모듈 1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의 발달육구다루기 (12시간). 모듈 2 보호, 양육, 발달육구를 다루기 위해서 혼용사용하기(9시간) 모듈 3 성과 관련된 발달적 이슈다루기(3시간) 모듈 4 성학대물 확인하고 증후에 반응하기(6시간) 모듈 5 아동과 친가족의 관계지지하기(9시간) 모듈 6 전문가 팀의 구성원으로 일하기(9시간) 모듈 7 아동의 개인적, 문화적 정체성 증진시키기 (6시간) 모듈 8 영속적인 결과를 촉진하기(9시간) 모듈 9 위탁경험 다루기(6시간) 모듈 10 아동과 가족의 약물의존(Chemical Dependency)의 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15시간) 모듈 11 아동발달을 이해하고, 촉진하기(3시간)	- DVD, 웹사이트에서 동영상 제공 - 긍정적으로 양육하기 1, 2 - 안전하게 양육하기 - ADHD - 반사회적애착장애 - 자해 - 도벽 - 가출 - 야뇨증 - 성적행동 - 도벽 - 수면장애 - 거짓말 - 방화 - 분노폭발 - 거식증
효과	위탁부모의 역할, 양육기술 습득에 효과적	위탁부모의 지식, 자아인식 증가
출처	PRIDEbook	Web-Based Training Center for Foster and Adoption Parents

* PRIDE Core 프로그램과 ** 위탁부모대학에서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입양부모 뿐만 아니라 위탁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됨.

5.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표 7>에 제시한 것과 같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 3조 책임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표 7〉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제3조 책임 -

-
- | |
|------------------------------------|
|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
|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
| 4. 입양 및 가족 지원 |
|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 7. 입양 모범사례 발굴 |
-

1)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입양가족지원센터 건립

국내 입양 부진을 해소하고,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차원의 입양홍보센터건립을 제안하며, 입양홍보센터에서 아래에 기술할 사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입양가족지원센터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 기구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입양홍보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한국입양홍보회 지역입양부모 모임에 위탁하는 방법, 입양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이미 설립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통합하여 '아동권리지원센터' 등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세 번째 방법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입양 교육, 홍보 및 연구 사업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양에 대

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므로,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반편견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1년에 1회 이상 교육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입양 반편견교육자료는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제작한 자료가 있다.

두 번째로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입양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외국의 연구결과와 같이 국내에서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배치방법인 친생부모양육, 위탁부모양육, 입양부모양육, 시설양육아동을 일반아동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온 천하보다 귀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향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해야 하므로 개별연구자가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행정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배치방법인 친생부모양육, 위탁부모양육, 입양부모양육, 시설양육에 따라 소요되는 각 각의 비용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입양은 다른 배치방법보다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친생부모양육, 위탁부모양육, 시설양육에 비해 입양부모에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향후 입양양육보조금을 친생부모(저소득), 위탁아동, 시설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제공한다면, 세 번째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배치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적극적 입양부모의 개발

현재 가정이 필요한 아동 수에 비해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으로 입양부모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입양부모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임부부에게 입양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산부인과에 입양과 관련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불임 시술시에 불임부부에게 자녀를 갖는 방법은 출산 이외에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음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위탁아동이 친생부모와 재결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수당, 양육비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위탁부모가 자신이 돌보고 있는 위탁아동의 입양을 권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양을 원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망설이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입양수당, 양육비 지원을 통해 최소한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자녀 1인당 양육비가 82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인 점을 감안한다면 중산층

가정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입양을 망설이기 쉽다.

4) 입양 수수료 및 양육보조금 지급

입양활성화를 위해 모든 입양아동의 수수료 및 입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 책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만 1세 이상의 연장아동, 장애아동²⁾,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 등 입양되기 어려운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수수료 및 양육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입양결정을 못하는 입양가정, 위탁아동을 입양하고 싶지만 경제적이 이유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위탁부모에게도 입양아동 양육비를 지원해주어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입양수당은 입양아동의 특성, 입양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어야 하지만, 200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418,309원과 우리나라 자녀 1인당 양육비 82만원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기준을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비장애 입양아동 1인당 매월 50~60만원의 양육비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도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확대한 후에 입양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5) 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먼저 입양아동이 발달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양아동을 위한 별캠프를 체계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양아동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입양아동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선배입양아동이나 또래입양아동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6)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먼저 예비입양부모교육이 필요한데, 예비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입양부모는 입양에 대한 걱정

2) 장애입양아동은 현재 월 525,000원의 양육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과 기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입양과정 스크린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지지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Barth & Berry, 1988; Farber et al., 2003; Groze, 1996; Kramer & Houston, 1998; Smith & Howard, 1999).

두 번째로 입양후 입양부모지지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 입양정보센터에 따르면 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는 정기적으로 집단에 참여한 부모들은 집단응집력을 발달시키고, 비공식적인 멘토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집단에 참여한 가족은 외로움은 덜 느끼고, 입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식은 더 많이 알게 되고, 입양아동을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족 내에서 그리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에게 입양에 대해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모임에 참여한 가족이 집단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보다는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좀 더 빨리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NAIC, 2005).

마지막으로 입양부모 특히 연장아동, 장애아동,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 등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므로,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입양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양부모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희(2006). *아동복지론*. 서울: 공동체
- 백경숙, 변미희(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사후 서비스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아동권리연구*, 5(2), 81-95.
- 보건복지부(2005). *아동복지통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가족 총소득대비 1인당 평균 자녀 양육비*.
- 한국입양홍보회(2006). *한국 지방자치단체별 입양가족 지원제도*.
- Barbara, M., & Andrew, P.(1990). Adopted and illegitimate children growing up. L. Robins & M. Rutter(Eds.),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pp.36-6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th, R. P., & Berry, M.(1988). *Adoption and disruption: Rates, risks, and respons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Child Welfare Institute(1991). *PS-MAPP: Trainer's Guide*.
- CWLA(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93). *PRIDEbook*.
- Farber, M. L. Z., Timberlake, E., Mudd, H. P., & Cullen, L.(2003). Preparing parents for adoption: An agency experience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0(3), 175-196.
- Gretchen, M. W., Julie, K. K., Harold, D. G., & Ruth G. M.(2003). The Family Adoption Communication (FAC) Model: Identifying Pathways of Adoption-Related Communication. *Adoption Quarterly*, 7(2), 53-84.
- Goze, V.(1996). *Successful adoptive families*. Westport, CT:Praeger.
- Kay, J., & Norma, S.(2005). Developing the Incredible Years Websrer-Stratton parenting skills training programme for use with adoptive Families. *Adoption & Fostering*, 29(4), 34-44
- Kirk, H. D.(1964). *Shared fate*. New York: Free Press.
- Kramer, L., & Houston, D.(1998). Supporting families as they adopt children with special needs. Folkman, *Stress* 47, 423-432.
- Michael, B., & Sören, S.(1990). Outcome in Adoption: Lessons from Longitudinal Studies. D. Brodzinsky, & M. Schechter(Eds.), *The Psychology of adoption*, pp. 93-10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AIC(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Clearinhouse, 2005). *Post-Legal Adoption Services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Their Families: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 Richard, J. D.(2005). *foster parent college*. Web-Based Training Center for Foster and Adoption Parents.
- Sally, J., Wadsworth, J. C., DeFries, & David, W. F.(1993). Cognitive Abilities of Children at 7 and 12 Years of Age in the Colorado Adoption Project.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6(9), 611-615.

Smith, S. L., & Howard, J. A.(1999). *Promoting successful adoptions: Practice with troubled families*. Thousand Oaks, CA: Sage.

스웨덴 정부 <http://www.sweden.gov.se>

프랑스 정부 <http://www.service-public.fr>

핀란드 정부 <http://virtual.finland.fi>

North American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http://www.nacac.org>

Swedish Intercountry Adoptions Authority(MIA). <http://www.mia.adopt.se>

The Adoption and Fostering Information Line(2006). <http://www.adoption.org.uk>, <http://www.fostering.org.uk>